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6 선고 2020가단3188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단체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C

피고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육오 담당변호사 한창현, 오화석, 김대수

변론 종결2022. 6. 8.

판결 선고2022. 7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. 10. 25. 접수 제259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A단체(이하 'A단체'이라고 한다)는 2019. 9. 2. B와 사이에, B가 E은행(이하 'E'이라고 한다)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중 80%인 1억 6,000만 원에 대해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한 다음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, B는 위 신용보증서에 기재 같은 달 3. E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.

나. B는 2020. 4. 8.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대손판정을 받는 등 보증사고를 내었고, 이에 A단체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. 4. 14. E에 162,622,3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. 2020. 4. 23. 기준 구상금채권 잔액은 162,815,765원이다.

다. 한편 B는 2019. 10. 18. 자신의 처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을 대금 1억 5,000만 원에 매도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고 한다)하고, 같은 달 25.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0. 18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를 마쳐주었다. B는 2019. 10. 22. 자신의 E은행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에서 자신의 다른 E은행 계좌(계좌번호 2 생략)로 1,900만 원, 3,100만 원, 1억 원 등 합계 1억 5,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자 명의를 피고로 기재하였다.

라.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.

1	이 사건 부동산	150,000,000	F은행	399,447,896
2	부산 사하구 G 공장용지 314.5m ²	468,605,000	F은행	21,600,000
3	부산 사하구 G 지상 공장	129,648,480	E은행	49,432,454
4	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	230,000,000	E은행	200,000,000
5			E은행	450,000,000
6			E은행	100,000,000
합계	978,253,480		1,220,480,350	

마. B는 2020. 2. 27. 부산지방법원 2020하단1001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1. 3. 26.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, 같은 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제11, 제15, 제16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변론

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인 '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'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(대법원 2006. 6. 15. 선고 2004다46519 판결, 대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2다30427 판결 등 참조), 위와 같은 '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'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.

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B는 채무초과상태였고,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불과 4개월 후인 2020. 2. 27.경 부산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21. 3. 26.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B는 머지않아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예상되는 부채초과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이로써 B는 적극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므로, 이는 파산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2019. 10. 18.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인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어머니이자 B의 전 장모였던 J가 2008. 12. 5.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다. 따라서 위 부동산은 처음부터 B의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B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등 파산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. 설령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무자력이 아니었고, 이 사건 부동산은 그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J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

가치가 없었고, J가 2010. 5.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B가 이를 피고에게 처분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나. 판단

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가 무자력, 즉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J와 B 사이에 2017. 12. 10.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2,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,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,00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, 2010. 5.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K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이성은

별지